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2. 26.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2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86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2. 2.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정상택

가. 제안이유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을 공개의 형태에 따라 62종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관련 대부분의 수수료 징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본 조례의 부칙에서 폐지하면서 존치할 필요가 있는 위생처리업 등의 신고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며, 기타 현실에 맞지않는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수수료를 현행 100원에서 현실에 맞게 150원으로 인상하여 조정함. (제3조 관련 안 별표)
-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그동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던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관련 대부분의 수수료 징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부칙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존치할 필요가 있는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신설함. (제3조 관련 안 별표)

종별 구분	수수료액(원)		비고
	신규 및 양수신고	변경신고	
위생처리업	7,000	3,500	1건당
세척제제조업	20,000	10,000	1건당
기타위생용품제조업	7,000	3,500	1건당

○ 서울특별시 위임사무중 공중위생법의 폐지로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사라진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 관련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 징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에 징수근거를 신설함. (제3조 관련 안 별표)

- 신규발급 : 1건당 3,000원
- 재발급 : 1건당 2,000원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수수료액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수수료액 및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여 조정함. (제3조 관련 안 별표)

○ 구민들의 정보공개청구 요구가 증가되고 공개요구 자료도 다양화됨에 따라서 현행 3개항목으로 되어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수수료를 62종으로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함. (제3조 관련 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 중 정보공개청구 요구의 다양화로 현행 3개 종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수수료를 공개요구 형태에 따라 62종으로 세분화하고, 1999. 2.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던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가 폐지됨으로써 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동 조례안 부칙에서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위생처리업 등의 신고관련 수수료만 동 조례안에 신설하였으며, 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는 삭제하고, 기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수수료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제3조 관련 별표 중 안 제1호타목에서는 현행 3개종목으로 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 안 제4호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2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호에서는 1999. 2. 8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징수되던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관련 대부분의 수수료는 징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 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위생처리업 등의 신고관련 수수료 6개 종목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1999. 2. 8일 제정되고 6개월이 지난 1999. 8. 9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규정에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음에도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2년여가 경과한 본 회기중에 동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폐지하려는 것은 그 동안 상위법령에 의하여 폐지된 종목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는 사료되나 자치법규를 제때에 정비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열람·정정·복사 수수료를 150 원으로 조정한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
- 답변요지(정상택 세무1과장) : 수수료가 소액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어떻게 산출된 수수료인가?
- 답변요지(정상택 세무1과장) : 민원봉사과에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수수료임.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는 제 때에 정비하도록 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기 바람.
- 답변요지(정상택 세무1과장) : 잘 알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2. 2.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을 공개의 형태에 따라 62종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관련 대부분의 수수료 징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본 조례의 부칙에서 폐지하면서 존치할 필요가 있는 위생처리업 등의 신고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며, 기타 현실에 맞지않는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 구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수수료를 현행 100원에서 현실에 맞게 150원으로 인상하여 조정함.(제3조 관련 안 별표)
- 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그동안 서울 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던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관련 대부분의 수수료 징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본조례의 부칙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존치할 필요가 있는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신설함.(제3조 관련 안 별표)

구 분 종 별	수수료액(원)		비고
	신규 및 양수신고	변경신고	
위 생 처 리 업	7,000	3,500	1건당
세 척 제 제 조 업	20,000	10,000	1건당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7,000	3,500	1건당

- 다. 서울특별시 위임사무중 공중위생법의 폐지로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사라진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 관련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 징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에 징수근거를 신설함.(제3조 관련 안 별표)
- (1) 신규발급 : 1건당 3,000원
 - (2) 재 발 급 : 1건당 2,000원
- 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수수료액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수수료액 및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여 조정함.(제3조 관련 안 별표)
- 마. 구민들의 정보공개청구 요구가 증가되고 공개요구 자료도 다양화됨에 따라서 현행 3개항목으로 되어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수수료를 62종으로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함.(제3조 관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근거법규

- (1)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공개청구 관련
 -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12.31 법률 제5242호) 제15조
 -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1999.12.7 대통령령 제16609호) 제18조
 -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12.14 행정자치부령 제21호) 제7조 관련 별표

- (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999.1.29 법률 제5715호) 제17조
- (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2000.3.28 대통령령 제16762호)
제21조

(2)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관련

- (가) 공중위생관리법(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조 및 (1999.2.8 법률 제5839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 (나)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2000.3.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부칙 제2항 및 제3항
- (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1997.1.15 조례 제351호)

(3) 이·미용사 면허증 관련

- (가) 지방자치법(2000.1.12 법률 제6115호) 제128조 및 제130조

(4)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련

- (가) 도로법(1999.2.8 법률 제5914호) 제77조의2
 - (나) 도로법시행규칙(2001.7.16 건설교통부령 제289호) 제33조제1항제2호
 -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2000.1.13 조례 제452호)
제10조
- (라) 하천법시행규칙(2001.8.4 건설교통부령 제291호) 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또는 승인 : 수수료의 신설 및 변경관련 해당부서와 협의완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1) 입법예고(2001.1.14~2.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중 “(42종)”을 “(39종)”으로 하고, 동호증 타목을 삭제하며, 동호 파목 (1) 내지 (3)의 수수료액란중 “100원”을 각각 “150원”으로 (2)의 단위란중 “1매당”을 “1건”으로 (3)의 단위란중 “1매당”을 “1매”로 하고, 제2호중 “(39종)”을 “(47종)”으로 하며, 동호 가목 (16)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에 (20) 내지 (27)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16) 하천부지 점용허가	1건	1,000원	
(20) 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원	
(21)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22) 세척제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20,000원	
(23)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원	
(25)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26)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	1건	3,000원	
(27)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1건	2,000원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62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가. 원본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00원 100원	
(2)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100원	
(3)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기준) 1회 10컷초과시 1컷마다	500원 100원	
(4)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50원	
(5) 녹음테이프 시청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6)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7)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나)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8)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나.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00원 100원	
(2)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100원	
(3)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50원	
(4) 녹음테이프(비디오) 시청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500원 500원	
(5)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1) 문서 · 대장 등 사본 (1매 기준)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300원 100원 250원 50원	
(2) 도면 · 카드 등 사본 (1매기준)	A2이상 A3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실 비 300원 100원 250원 50원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1건마다	5,000원 3,000원	
(4)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1편마다	5,000원 3,000원	
(5)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컷마다	3,000원	
(6)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은 별도) (가) 마이크로 필름 사본 (출력물: 1매 기준)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1롤마다	300원 200원 250원 150원 1,000원	
(나) 마이크로 필름 복제			
(7) 사진 · 사진필름(매체비용은 별도)			
(가) 사진필름 인화 (1매 초과마다)	1컷 3 " × 5 " 5 " × 7 " 8 " × 10 "	500원 200원 300원 400원	
(나) 사진필름 복제	1컷마다	6,00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라. 전신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마체비용은 별도)			
(가) 문서·대장 등 사본 (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B4이하	300원 250원	
(나) 문서·대장 등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50원 100원	
(2) 모연·카드 등(마체비용은 별도)			
(가) 모연·카드 등 사본 (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B4이하	300원 250원	
(나) 모연·카드 등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50원 100원	
(3)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마체비용은 별도)	10분마다	3,000원	
(4) 사진·사진필름(마체비용은 별도)			
(가) 사진·사진필름 사본(종이 출력물)	1컷	250원	
(나) 사진·사진필름 복제	3"×5" 5"×7" 8"×10" 10분마다	50원 100원 150원 5,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u>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u>				<별 표> <u>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u>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2종)				1. ----- (39종)			
(단위 : 원)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 료액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카.(생략)	(생--)	--(략)		가. ~카.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삭))	과 같음 (제)	
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파.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 문서 또는 필름 열람	1건(1회)당	100원		(1) -----	-----	150원	
(2) 문서의 복사	1매당	100원		(2) -----	1건	150원	
(3) 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	1매당	100원		(3) -----	1매	150원	
파.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하.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1) 문서의 열람	1건1회	100원					
(2) 문서의 정정	1매당	100원					
(3) 문서의 복사	1매당	100원					
하. (생략)	(생--)	--(략)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39종)				2. ----- (47종)			
종 목	단위	수수 료액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가. -----			
(1)~(15) 생략	(생-----)	--(략)		(1)~(15) 현행과 같음	(현행 1건)	과 같음	
<u>(16) 도로·하천부지 점용</u> (지하도, 지하상가, 노상 주차장)허가	1건	600원		<u>(16) 하천부지점용허가</u>	1건	1,000원	
(17)~(20) 생략	(생-----)	--(략)		(17)~(20) 현행과 같음	(현행 1건)	과 같음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나. -----			
(1)~(19) 생략	(생-----)	--(략)		(1)~(19) 현행과 같음	(현행 1건)	과 같음	
<u>(신 설)</u>	(신-----)	--(설)		<u>(20) 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u>	1건	7,000원	
				<u>(21) 위생처리업 변경신고</u>	1건	3,500원	
				<u>(22) 세척제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u>	1건	20,000원	
				<u>(23)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u>	1건	10,000원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 료액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24)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원	
				(25)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26)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	1건	3,000원	
				(27)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1건	2,000원	

(쇠 설)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62종)

종 목	단위	수수 료액	비 고
<u>가. 원본의 열람·시청</u>			
(1)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5매마다	200원 100원	
(2)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100원	
(3)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기준)1회 10컷초과시1컷마다	500원 100원	
(4)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50원	
<u>(5)녹음테이프 시청</u>			
(가) 1편이 1페이지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60분기준)	1,500원	
(나) 여러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분기준)	700원	
(6)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60분기준)	1,500원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분기준)	700원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 료액
(7)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마다 (60분기준)	3,500원	
(나)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마다 (30분기준)	2,000원	
(8)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나.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1)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5매마다	200원 100원	
(2)도면·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3)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초과마다	100원	
(4)녹화테이프(비디오)시청	1매	200원	
(5)슬라이드 시청	1매초과마다 30분초과시10분마다	50원 1,500원 500원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1컷마다	200원	
(1)문서·대장 등 사본 (1매기준)	A3이상 1매초과마다	300원 100원	
(2)도면·카드 등 사본 (1매기준)	B4이하 1매초과마다	250원 50원	
(3)녹음테이프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A2이상 A3 1매초과마다	실비 300원 100원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B4이하 1매초과마다	250원 50원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1조마다	3,000원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 료액
	(비고)		
	<u>(4) 드록테이프(비디오) 복제</u> <u>(매체비용은 별도)</u>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u>(5) 슬라이드 복제</u> <u>(매체비용은 별도)</u>	1컷마다	3,000원
	<u>(6) 마이크로 필름</u> <u>(매체비용은 별도)</u>		
	(가) 마이크로 필름 사본 (출력물 1매기준)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300원 200원 250원 150원
	(나) 마이크로 필름 복제	1롤마다	1,000원
	<u>(7) 사진 · 사진필름</u> <u>(매체비용은 별도)</u>		
	(가) 사진필름 인화 (1매초과마다)	1컷 3" × 5" 5" × 7" 8" × 10"	500원 200원 300원 400원
	(나) 사진필름 복제	1컷마다	6,000원
라.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u>복제물</u>		
	<u>(1) 문서 · 대장 등</u> <u>(매체비용은 별도)</u>		
	(가) 문서 · 대장 등 사본 (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B4이하	300원 250원
	(나) 문서 · 대장 등 복제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50원 100원
	<u>(2) 도면 · 카드 등</u> <u>(매체비용은 별도)</u>		
	(가) 도면 · 카드 등 사본 (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B4이하	300원 250원
	(나) 도면 · 카드 등 복제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50원 100원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 료액
		(3)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 <u>(매체비용은 별도)</u>	10분마다	3,000원
		(4) 사진 · 사진필름 <u>(매체비용은 별도)</u>		
		(가) 사진 · 사진필름 사본 <u>(종이 출력물)</u> <u>(1매초과마다)</u>	1컷	250원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나) 사진 · 사진필름 복제	10분마다	5,000원